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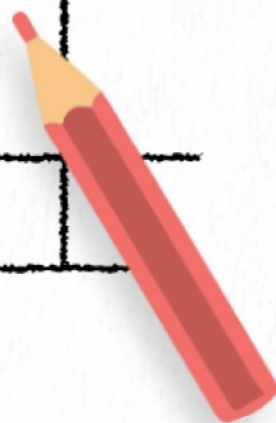


EBS  공인중개사 랜드하나

기초서

랜드하나 기초서마리보기

기초서교재샘플 PDF



용어정리 6 부동산세법

제1편 조세총론 용어

001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002 과세대상

세법에 따라 과세의 목적이 되는 소득, 행위, 수익, 재산 등을 말하며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003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004 세율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005 물납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조세채무의 이행을 금전 이외의 물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물납은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다.

006 분할납부

조세는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007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008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하여 신설되었으며,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009 연계정보통신망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010 원천징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특정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01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특정 시점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12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 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013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특정 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014 부과의 철회

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능으로 징수유예를 한 경우는 납세자의 행방이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부과철회를 하여야 한다.

015 제척기간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진행 중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016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법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017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018 우선권

- ① 국세우선권 :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지방세우선권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019 법정기일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말한다.

020 당해세

당해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한다.

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경우에 한함),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021 교부청구

조세채납자에 관하여 다른 원인으로 강제집행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을 경우, 그 환가처분에 참가하여 체납세금의 교부를 받아서 징수목적 달성과고자 하는 청구를 말한다.

022 불복청구

세법에 의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023 서류의 송달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024 공시송달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025 전자송달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함)에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2편 지방세 용어

» 취득세

026 시효취득

물건을 오래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그 점유자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027 종류변경

차량과 기계장비의 경우 원동기·최대적재량·승차정원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되는 것, 선박의 경우 기관이나 정원·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028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법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029 광업권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탐사권)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채굴권)를 말한다.

030 조광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031 간주(看做)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032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으로 나뉜다.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에 의한 유증을 의미한다.

033 사인증여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생전 계약으로 증여자가 사망시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증여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034 공사준공인가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사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준공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인가하여 주는 시점을 말한다.

제1장 조세의 기초이론(「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 출제경향 및 학습방향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세법의 전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처음 공부할 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용어를 익히고 부동산세목을 중심으로 주요 특성과 내용을 공부하여야 한다. 조세의 분류 중에서는 목적세, 인세와 물세, 부가세 등을 숙지하고, 조세의 용어정의에서는 징수방법과 가산세(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1 조세의 개념

1.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경비 및 특정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주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2) 조세의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책적·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래의 목적이 재정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과료 등은 조세가 아니다.

(3) 조세는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또는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특정의 공공서비스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용료·수수료 등과는 구별된다.

(4)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참고학습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세금을 과세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요소이다.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4분설이 통설적 입장이다. 즉 과세가 가능하려면 먼저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과세물건이 귀속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

(5)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조세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강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6)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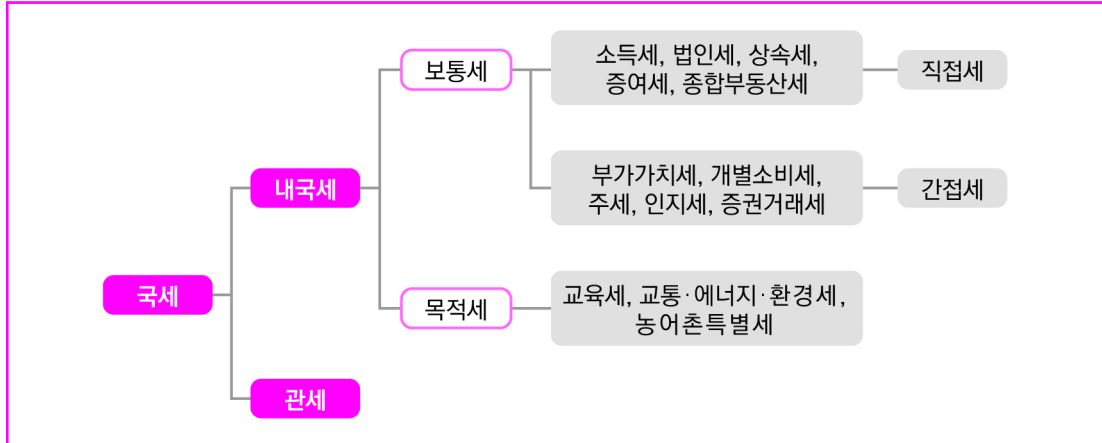
① 의의: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된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한편, 국세는 1세목에 1세법이 있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목 :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 국세의 체계



(2) 지방세

- ① 의의 :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시·군·구)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②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 지방세 체계

구 분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도 세	시·군세	
보통세	-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비세 - 레저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2. 조세의 전가유무에 따른 분류

(1) 직접세

- ① **의의**: 납세의무자와 조세의 실제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2) 간접세

- ① **의의**: 조세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 ② **세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 ① **의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즉,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이다.
-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에 속한다.

(2) 목적세

- ① **의의**: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로, 조세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세목**

- ㉠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참고학습

조세수입의 용도

구 분	세 목		사용목적
국 세	교육세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자원 확보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및 에너지, 환경사업 등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특정자원분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특정시설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4.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의한 분류

(1) 인세

- ① 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의 조세부담능력이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다.
- ② 세목: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물세

- ① 의의: 사람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물적 측면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로, 개개의 수입이나 재산 자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이나 면적 또는 건수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1) 종가세

- ① **의의**: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2) 종량세

- ① **의의**: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수량·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세목**: 등록면허세 중 일부(말소등기·변경등기),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1) 독립세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2) 부가세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국세 중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학습

부동산관련 본세와 부가세

본세	부가세
취득세	①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② 지방교육세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단,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7.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조세를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한다.

(1) 취득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있다.

(2) 보유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등이 있다.

(3)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건설업),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있다.

3 조세용어의 정의

(1)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지방세는 지방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지방세관계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6)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가액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하며,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8)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9)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0)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1)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2) 세무공무원

- ①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② 국세

-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 ㉡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13)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①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지방세(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연대 납세의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4)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5) 조세의 징수

- ①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보통징수(국세 ⇨ 정부부과과세):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 지방세(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징수 방법에 따른 세목

지방세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분 주민세 등
	보통징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 개인분 주민세 등
	특별징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국세	신고납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등
	정부부과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원천징수	소득세 일부, 법인세 일부 등

(16) 가산세 및 가산금

① 가산세

- ㉠ 의미 :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가산세는 보통징수방법(또는 정부부과과세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 구분 :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여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가 불성실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② 가산금(지방세에 한정)

- ㉠ 의미 :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산금의 구분

- ㉢ 일반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 증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0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